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5-3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5-35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5-36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025-37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14
2025-38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9
2025-39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21
2025-40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5-41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30
2025-42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2025-43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34
----------	---------

발의일자	2025. 03. 27.
발 의 자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신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연차 공무원 대상 안식휴가 신설(제13조)

-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정비(안 별표 3)

-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 : 법령 재 기재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03. 17. ~ 03.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식휴가를 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특별휴가) ①~⑤ (생략) ⑥ 의장은 <u>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u> 다음 각 호의 <u>휴가</u>를 허가 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u><신 설></u> <u><신 설></u>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⑦ (생략)	제13조(특별휴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은 <u>공무원에게</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안식휴가</u>를 <u>줄</u>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⑦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u>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때 원경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35	발의일자	2025. 03. 27.
		발 의 자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 기구화를 규정하고 있는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 규정을 더욱더 명확히 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코자함.

2. 주요내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조항 신설
(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3. 20. ~ 03.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하고 제2조의3을 제2조의2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부위원장,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신 설></u>	<u>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u>
<u>제2조의2(임기 등) 위원의 임기·선임, 위원장 선임·직무, 부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를 준용한다.</u>	<u><삭 제></u>
<u>제2조의3(기능) ① 위원회는 의원이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u> <u>② 위원회는 의장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0조·제82조·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u>	<u>제2조의2(기능) ① 위원회는 의원이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u> <u>② 위원회는 의장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0조·제82조·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u>
<u>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u>	<u>제9조(준용)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부위원장,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등을 준용한다.</u>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36	발의일자	2025. 03. 27.
		발 의 자	최준규,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거창군의회 회의록 공개 시기,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방청 제한시 그 사유와 근거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안 제48조제6항)

-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공개

나. 방청 예약절차 마련(안 제76조)

- 현장, 온라인,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방청 신청

다. 용어 순화 및 정비(안 제79조제1항제2호, 제3호)

라.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고지 규정 신설(안 제79의2)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2조, 제93조, 9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6조, 제83조, 제84조, 제97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3. 20. ~ 03.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현장, 온라인,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9조제1항제2호를 “술기운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방청 제한 고지) 제79조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10장(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중 계

제9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제93조(중계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

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4조(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보존하여 의회 누리집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u>의하여</u>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⑤ (생략) <u><신 설></u> 제76조(방청의 허가) <u>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u>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생략) <u>2. 술에 취한 사람</u>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u>자</u> ② · ③ (생략) <u><신 설></u>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u>제1항에 따라</u>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u>따라</u>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4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u> 제76조(방청의 허가) <u>의장은 현장, 온라인,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방청신청을 받아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u>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u>2. 술기운이 있는 사람</u>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u>사람</u>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79조의2(방청 제한 고지) 제79조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u>

<u><신 설></u>	<u>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한다.</u> <u>제10장 중 계</u>
<u><신 설></u>	<u>제9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는 회의 의사를 회의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u>
<u><신 설></u>	<u>제93조(중계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u> <u>② 중계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신 설></u>	<u>제94조(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보존하여 회의 누리집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u>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37
----------	---------

발의일자	2025. 03. 27.
발 의 자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이흥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김혜숙

1. 제안 이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인구 유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안 제5조, 제6조)
- 마. 거창한군민제도 운영(안 제7조)
- 바.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안 제8조)
-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15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인구교육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03. 05. ~ 03. 1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거창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나.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거창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
 - 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
 - 라. 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3. “거창한군민 가맹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특산물 판매소, 음식점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나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추진함에 있어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방문 지원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행사,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제7조에 따른 거창한군민제도 운영 및 거창한군민 가맹점 모집·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거창한군민제도 운영) ① 군수는 거창한군민이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하 “거창한군민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한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지원
2. 거창한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거창한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거창한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거창한군민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거창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한군민 혜택 참여업체에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생활인구 사업추진(안 제6조)
- 나. 거창한군민제도 운영(안 제7조)
- 다. 시설입장료 감면 등 지원(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나. 지원사유 발생 시 예산확보 예정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신 순 화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38	발의일자	2025. 03. 27.
		발 의 자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2024년부터 경상남도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이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나목, 지방자치법 제28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인구교육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3. 10. ~ 03.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39	발의일자	2025. 03. 27.
		발 의 자	이홍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청소년의 중독이 자살 사고로 까지 번지는 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발굴하고 각종 중독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중독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라.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마.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청소년보호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인구교육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03. 17 ~ 03.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약물·도박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② “중독”이란 마약,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갈망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 등) ① 군수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중독된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3. 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중독 예방과 중독 조기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1항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중독 예방·치료 등의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관련 사업추진(안 제4조)
- 나.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사업 추진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 지원(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나. 지원사유 발생 시 예산확보 예정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신 순 화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40	발의일자	2025. 03. 27.
		발 의 자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이흥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김혜숙

1. 제안 이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등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회복을 위한 공공요금 및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지원(안 제4조)
- 나. 이자지원의 요건 등(안 제5조)
- 다. 지원 중지·환수(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3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의8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경제기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03. 18. ~ 03.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수료”를 “수수료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
5. 경영환경개선 지원
6.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자문 및 교육 지원
7. 제품의 홍보·마케팅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조 제목 “(지원 및 제외 대상)”을 “(이자지원의 요건 등)”으로 한다.

제9조 각 호의 부분 중 “이자지원을 받은 자”를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자”로, “이자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융자률”을 “지원율”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융자금”을 “지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u>할 수 있다. 1. 이자지원 2. 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u>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u> 수 있다. 1. 이자지원 2. 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u>3.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u> <u>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u> <u>5. 경영환경개선 지원</u> <u>6.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자문 및 교육 지원</u> <u>7. 제품의 홍보·마케팅</u> <u>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자지원의 요건 등) ①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 치·향락업종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③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 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 중지·환수) 이자지원을 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 하 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장을 휴업·폐업하거나 군 이외 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 치·향락업종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③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 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 중지·환수)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지원을 중지 하거나 환수 할 수 있 다. 1. 사업장을 휴업·폐업하거나 군 이외 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및 범위 확대

나. 관련 조문: 소상공인 지원(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군비	175	175	175	175	175	875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154백만원
- 소상공인 맞춤형컨설팅 지원: 10백만원
-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11백만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김 미 정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41	발의일자	2025. 03. 27.
		발 의 자	신중양, 이재운, 김향란,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이유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관광기본법」 제6조, 「관광진흥법」 제48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관광진흥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03. 18. ~ 03.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
7.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6. 야간관광 자원·명소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안 제5조)
- 나. 재정 지원(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나. 지원 사유 발생 시 예산확보 예정

작성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42	발의일자	2025. 03. 27.
		발 의 자	신재화,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거창군 관내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다.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라. 수색활동 지원(안 제5조)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안전총괄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03. 20. ~ 03. 26.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참고: 해당없음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거창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실종자 수색활동 참여자 지원

나. 관련 조문: 군수의 책무 및 수색 활동 지원(안 제4조 ~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군비	5	5	5	5	5	25

3. 비용추계 상세내역

가. 실종자 수색지원 간식비: 3백만원

나.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제공: 2백만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43	발의일자	2025. 03. 27.
		발 의 자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목의 가지치기 등 신설(안 제3조제1항제9호)

나. 호이동 (안 제3조제1항제9호->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도시건축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3. 10. ~ 03.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목의 가지치기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 한다)을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부대 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정비공사(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노후 상·하수도 설비 정비공사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공사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 6. 노후 소화·피뢰설비 교체 공사 7.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통신설비 정비공사 8.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신 설>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물 관리 ② (생략)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 한다)을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부대 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정비공사(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노후 상·하수도 설비 정비공사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공사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 6. 노후 소화·피뢰설비 교체 공사 7.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통신설비 정비공사 8.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9. 수목의 가지치기 등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물 관리 ② (현행과 같음)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 비용

나. 관련 조문: 지원대상 및 기준(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합계
군비	900	600	600	450	450	3,000

- 1) 10년이상 자체 군비로 계속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도표는 연도 별 편성된 예산을 입력하였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음.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